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지 언 (선임연구위원, 3705-635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허가되는 데 그치고 있다.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및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소 제기 시 대표당사자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또한 소송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집단소송의 제약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인지대 및 소송비용 등 대표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의 대부분을 수시공시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수시공시 위반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시공시의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수시공시 위반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집단소송만이 허가되는 데 그치고 있다. 2009년 4월 법원이 분기실적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진성이엔티」에 대한 투자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인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도입 당시에는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의 의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suit)이란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과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증권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의 대표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및 제37조). 이와 같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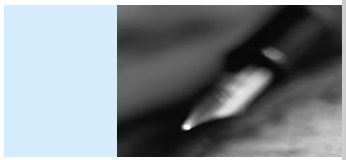
한편 집단소송과 유사한 제도로 상법상 대표소송제도가 있다(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기관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고인 소수주주가 승소하면 그 이익이 회사에 귀속된다. 반면 집단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면 그 이익이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된다.

소송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보유증권의 합계가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집단소송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예측정보¹⁾ 등(발행공시)의 허위·부실기재, ②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를 제외한 사업보고서 등(정기공시)의 허위기재, ③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④ 회계감사인의 부실 감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제3조 제1항).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제12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에 인지를 붙

1) 자본시장법상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에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관한 예측 또는 전망을 기재할 수 있는데, 예측정보란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말함(자본시장법 제119조)



여야 하며 인지대의 상한은 5,000만원이다(제7조).

법원은 소송을 허가하고(제7조 및 제15조), 집단소송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며(제10조), 특정한 대표당사자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정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대표당사자는 소송 허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각종 고지·공고·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제16조).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적인 부작용인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7조), 대표당사자는 소송 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제13조). 둘째,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제11조). 셋째,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한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제9조). 넷째,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청구액에 상응하게 부담시키는 한편,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제7조). 다섯째, 성공보수를 목적으로 집단소송의 제기를 부추기는 변호사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수를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집단소송의 기능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첫째, 집단소송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집단소송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시장건전성(market integrity)과 투자자 신뢰(market confidence)를 증진한다. 불법행위가 줄어들면 증시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자산운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셋째, 집단소송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의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집단소송의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경영·회계·감사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게 된다. 집단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취득하므로 대표소송과는 달리 유인

집단소송 제도는 소액주주 보호, 시장건전성과 투자자 신뢰 증진, 시장규율에 의한 기업 투명성 개선, 규제 완화의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이다.

넷째,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 집단소송은 규제완화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소극적 기능보다는 증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단소송은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중복소송을 방지하여 사법당국의 소송부담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사안별 판결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집단소송을 당한 피고기업의 경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우려도 있다.

둘째, 집단소송의 이득을 노리는 전문브로커가 등장하여 소송을 남용하거나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를 협박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 문제와 관련된 남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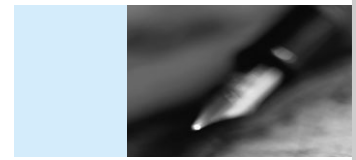
셋째,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남소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한 남소의 가능성 때문에 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상장 및 예측공시 등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집단소송이 남용될 경우에는 기업활동을 위축하고, 증권의 발행, 상장, 예측공시 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가진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실적은 500건(무혐의 제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도가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송 제기에 많은 제약을 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제약요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²⁾

2) 이 외에 집단소송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구성원 50인 요건,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요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횡수 제한 등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소 제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대표당사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를 받거나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피고측의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복잡한 소송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의 소 제기에 따른 위험은 줄어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인지대 상한을 낮추는 한편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도 선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들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은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고,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화해금을 노리고 소송권을 남용한 경우(frivolous suit)에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Securities Act of 1933 §27(c)), 일반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둘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의 적용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례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발행공시나 정기공시만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시공시 위반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 8일까지 142건(101개 기업)의 불성실공시 중에서 정기공시는 32%인 45건에 불과한 반면 수시공시는 68%인 97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의 상당 부분을 수시공시가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시공시 위반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포괄주의에 따라 「증권」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증권 거래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의 유형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KIF**

향후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